

정수장 위생안전 [] 인증
[] 재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90일	
신청인	명칭			대표자	
	소재지			담당자 전화번호	
	신청부서 및 담당자			담당자 전자우편	
신청대상 정수장	시설명(시설용량 : m ³ /일)			전화번호	
	정수장 소재지(상세주소)				
	처리공정				
	운영부서 및 담당자			사용(가동)개시일	

「수도법」 제33조의2제2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수장의 평면도	수수료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	2. 「수도법」 제33조의2제2항제2호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.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	

처리절차

